

종류	소유자	주소

제3조 (전입의무)

- ① 대출 실행 당시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제2조의 구입 대상 주택의 기존 임대차계약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을 해야 합니다.
- ② 대출 실행 당시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전항에 따라 전입을 완료한 경우, 전입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즉시 저축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.

제4조 (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)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(가계용) 제7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본 대출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하게 되고, 그에 따라 본 대출을 변제할 의무를 집니다.

1. 대출 실행 당시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구입주택의 기존 임대차계약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2조의 구입대상 주택으로 전입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

제5조 (여신거래 약정위반)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대출 완제 여부에 관계없이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자의 약정 위반사실이 제공되며, 향후 3년간 금융기관^{주8)} 주택 관련 대출^{주9)} 이 제한됩니다.

주8)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 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

주9) 「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」<별표5> 제1호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등

1. 대출 실행 당시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구입주택의 기존 임대차계약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2조의 구입대상 주택으로 전입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
2. 제2조의 구입대상 주택으로 전입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본 대출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